

### 제1조 (용어의 정의)

1. “전시자”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,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.
2. “전시회”라 함은 “서울국제퀼트페스티벌 2010 (SIQF 2010)”을 의미한다.
3. ”주최자”라 함은 (주)우정코퍼레이션을 말한다.

### 제2조 (전시 스페이스 할당)

1. 주최자는 신청접수순,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.
2.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스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,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3. 조립부스 안에서 목공공사를 할 수 없으며, 공사를 할 경우 독립부스를 신청해야 한다.

### 제3조 (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)

기획사가 제공한 설치 예정 도면으로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선착순으로 신청한다. (입금기준) 신청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-1 로얄팰리스 A-106에 제출 하여야 하며(팩스 가능) 신청과 동시에 계약금 50%(참가안내서 참조)를 납입하여야 한다. 잔금은 2010년 8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부스 예상 면적과 실 신청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전시면적이 조정될 경우 기획사는 전시자에게 조정내용을 통지 하고 부스 배치를 조정한다.

### 제4조 (설치 및 철거)

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. **부스 내에 비품, 광고물을 설치 할 경우 열려진 면을 가려서는 안 된다.** 추가 조명을 설치할 경우 개당 20,000원의 금액을 기획사에 납부하고 설치 할 수 있다. 부스내의 비품은 전시자가 직접 조달 하며, 기획사는 협력 렌탈 업체를 선정한다.

### 제5조 (주최측에 대한 정보제공)

전시자는 주최자의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측에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 (보험 보안 및 안전)

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계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호 할 수 있다.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최자는 필히 시공 작업을 제한 할 수도 있다.

### 제7조 (부스 관리 및 관리비)

전시자는 전시장내의 관리비를 부담한다. (전기료, 청소비, 용수, 야간 방법비) 부스 내 쓰레기는 당일 전시 종료 후 복도로 내어 놓고, 부스 안에는 청소를 못합니다. **1부스당 30,000원**으로 한다.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,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
### 제8조 (현장판매금지)

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 주는데 있으므로,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 할 수가 없다. 단,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,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### 제9조 (일부 사용 취소 및 위약금)

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.

- 전시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 했을 경우:  
취소면적 / 신청면적 X 참가비(조립부스비포함) X 80%
- 전시개시일 1개월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 :  
취소면적 / 신청면적 X 참가비(조립부스비포함) X 50%

### 제10조 (해약 및 해약금)

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.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.

- 전시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 했을 경우:  
참가비(조립부스비포함) X 80%
- 전시개시일 1개월 이전에 취소했을 경우 :  
참가비(조립부스비포함) X 50%

### 제11조 (전시회 취소, 변경)

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 단, 불가항력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.

### 제12조 (출입)

주최자는 부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**전일 자유 출입증을 업체당 2개**를 지급하며 추가로 원할 경우 1개 출입증 당 1만원의 자유 출입증을 지급할 수 있다. (최대 4개) 어떠한 경우라도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장을 할 수 없다. 부정 입장이 밝혀질 경우 출입증을 압수하고 모두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### 제13조 (입장권)

주최자는 부스 참가자에게 참가비의 10%에 해당하는 초대권을 무료로 배급한다.

### 제14조 (보충규정)

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전시자는 코엑스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제15조 (분쟁해결)
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서울 소재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. 본 항의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

**\*\* 불법복제 상품은 전시장내 진열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전시자는 이를 유념하여야 한다. 전시자간의 특허 분쟁이 있을 경우, 주최자는 개입하지 않으며, 해당 전시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**

상기 SIQF 부스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주소 :

이름 :

서명

날자 :

(주)우정코퍼레이션

대표 김경철

